

투자위험등급 :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개인 MMF1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개인 MMF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개인 MMF1 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2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 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1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개인 MMF1 호 (11120)			
종류 (클래스)	종류 A-u2	종류 C	종류 C-P	종류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9026	A9027	AL978	AP4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종류A-u2에 한함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개인 MMF1 호 (11120)			
종류 (클래스)	종류 A-u2	종류 C	종류 C-P	종류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9026	A9027	AL978	AP4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1998.2.09	Pru개인MMF2-1호 최초 설정
2007.3.22	익일 입금 및 익일 환매 시행
2007.4.17	푸르덴셜개인MMF1호로 투자신탁명 변경
2011. 2. 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주)S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변경: 0.02% => 0.01%
2011. 9. 19	집합투자업자 합병으로 인한 투자신탁 명칭 변경 푸르덴셜개인MMF1호=>한화개인MMF1호
2012. 3. 5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변경 이전의 기존 수익자의 경우에는 종류C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간주) -종류 수익증권(종류 A-u2, C) 추가
2013. 10. 14	종류 수익증권(종류 C-P) 추가
2014. 2. 21	종류 S수익증권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4년 2월 21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오현세	1964	본부장	81개	83,668억	-부산대학원(경제학) -현대투자신탁증권(6년 9개월) -한화자산운용(1998.3~현재)
부책임 운용 전문인력	박하나	1980	매니저	-	-	-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BS투자증권 (2년 4개월) - SK증권 (1년 1개월) - 알파에셋자산운용(6년 2개월) - 한화자산운용(2014년 2월~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은 F사업본부가 팀제로 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과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고,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기준일(2014년 2월 21일)에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14년 2월 17일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악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펀드 수	운용규모
오현세	5개	4,764억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4.02.21	윤세정	박하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A-u2에 한함)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최초 설정일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사무관리	
A-u2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 환권	납입금 액의 1.0% 이하 ¹⁾	-	-	연0.1065%	연0.20%	연0.025%	연0.01%	2012.03.06
C	제한 없음	-	-	-	연0.1065%	연0.2485%	연0.025%	연0.01%	1998.02.09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	-	-	-	연0.1065%	연0.140%	연0.025%	연0.01%	미설정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중개업 인가 받은 회사를 통한 온라인 가입	-	3년미만 환매시 0.1%이 내	-	연0.1065%	연0.100%	연0.025%	연0.01%	미설정
---	---	---	---------------------------	---	----------	---------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12. 3. 5일자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이전에 이미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종류C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의 '다. 전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형 구조

-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11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①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Value포커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주식에 60%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저평가된 주식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0

②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1조클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주식에 60%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국내 기업 중 영업이익의 1조원 이상 또는 향후 수년래 영업이익의 1조원 달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 선별된 핵심기업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이 비교지수를 일관성 있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1. 9. 14

③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식,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장내외 파생상품
주요 투자전략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시장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0.11. 5

④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채권매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⑤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 투자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은 글로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지역별, 섹터별 자산배분을 통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차익을 포함하는 토털리턴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부동산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⑥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한화동남아시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100%이하 투자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한화동남아시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

	<p>투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자산탁은 리서치를 통하여 동남아시아국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기업 주식 중에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합니다. - 모두자산탁의 기준가격은 미국달러화로 표시되며 동남아시아 해당국가의 통화와 미국달러화간 환헛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자투자자산탁의 기준가격은 한국원화로 표시되며 모두자산탁표시통화인 미국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헛지거래를 합니다(목표 헛지비율은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 있음). <p>그러나 이 투자자산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⑦한화차이내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자산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자산탁주식인 한화차이내H스피드업1.5배증권 모두자산탁(주식-파생형)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발행한 주식(H-share) 및 이와 관련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
주요 투자전략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HSCEI 지수에의 노출도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1.5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산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1. 2. 7

⑧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자산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 모두자산탁(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채권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자산탁의 모두자산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DR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자산탁은 국채, 지방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탁은 환헛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산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⑨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외화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흥국 시장(이머징마켓) 채권 또는 미국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과 자본이익으로 토달리턴(Total Return)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헷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⑩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주가지수선물에 주로 투자(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구성종목, KOSPI200을 구성하는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 및 주가지수선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KOSPI200지수 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로 주가지수선물 매수전략을 구사하여 KospI200지수 상승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추적오차 발생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0

⑪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채권에의 투자는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활용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것
②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
③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④단기대출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함
⑤금융기관 예치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를 말함
⑥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전자단기사채등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함
⑧기 타	- 환매조건부매도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등>

①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0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②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 예외	상기의 ‘①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상기 ②의 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상기 ②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동일인 거래 금액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④ 증권 대여,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⑤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⑥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⑦ 가중평균	투자신탁자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⑧ 기타	투자신탁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⑨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1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가. 현금 나. 국채증권 다. 통화안정증권 라.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2)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3)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전자단기사채 마. 환매조건부매수 바. 단기대출 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예의 예치
⑪30%이상 투자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가. ⑩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나.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⑩ 라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산 다. ⑩의 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③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나.투자제한의 ⑩ 및 ⑪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안전성을 강화한 운용을 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합니다.
 -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활용합니다.
- 펀드의 유동성을 고려한 운용을 합니다.
 - 투자기간이 짧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매경BP Call 100%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별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시가과리율을 점검하여 허용수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한도 이내에서 운용되는지 점검하여 금리위험을 통제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 발행자별, 업종별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유동성제약자산 비중 및 환매에 대비한 가용현금 비중을 점검·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 단기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부가과 시가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 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위험등급	분류	개요 및 예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위험자산¹⁾편입비 60% 이상 또는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7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²⁾이 10%을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³⁾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초과인 집합투자기구⁴⁾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50% 이상 7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⁵⁾을 만족하는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저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5년 이상 적립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⁶⁾에 순자산의 3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⁷⁾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위험자산편입비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³⁾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금융공학적 운용기법을 도입한 원금보존 추구형이지만, 실제 운용상에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및 투자등급채권 등⁶⁾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국공채 및 투자등급채권 등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⁸⁾ 3년 이상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듀레이션 3년 이하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위험자산은 주식, ETF, 주식형수익증권 등 실질적으로 주식투자 성격을 갖는 자산, 상품(Commodity), 지분, 대출 및 대출채권, REITs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파생상품위험평가액 기준)을 포함함
- 2)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은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을 포함함
- 3)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및 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은 발행자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감안하지 않고 설계구조만을 의미함
- 4)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도 기초자산의 변동성, 거래상대방위험, 레버리지수준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5) 분산요건이라 함은 국내주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KOSPI수준의 섹터분산이 된 지수를 의미함
- 6) 투기등급채권 등 이라함은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CP(B+등급 이하),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투자등급채권 등 이라함은 투자등급채권, 투자등급CP, CD를 포함함
- 7)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투자지역 등에 따

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8) 듀레이션은 펀드의 실제 듀레이션이 아닌 비교지수의 듀레이션을 의미함

※ 위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위험등급분류에 적용되는 편입비는 모두 집합투자계약의 편입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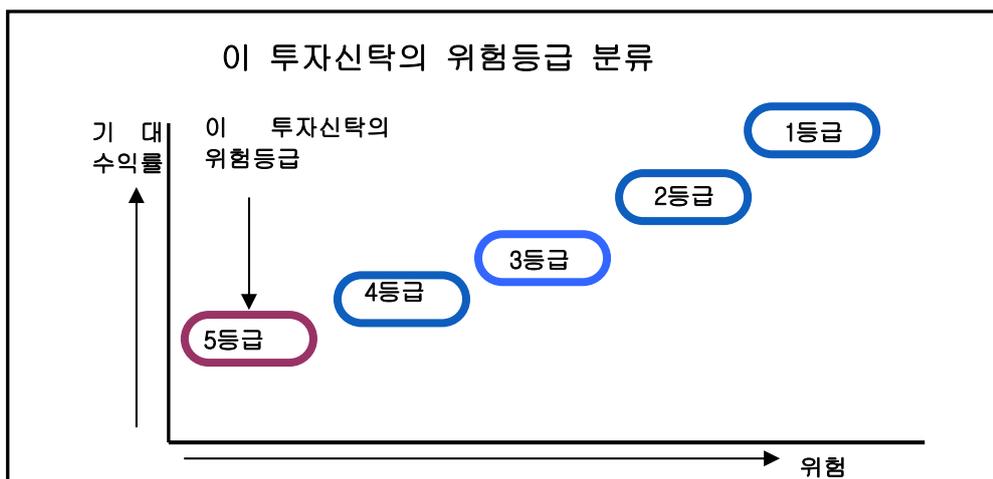
※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운용담당자, 상품개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험등급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판단함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예시 외에 고객 위험성향에 따라 국제적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재간접형 펀드를 포함하여 위 위험등급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레버리지 수준, 벤치마크지수의 위험수준, 분산투자수준, 목표트레이딩에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전략의 복잡성, 상품의 친밀도, 만기기간 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매입가능 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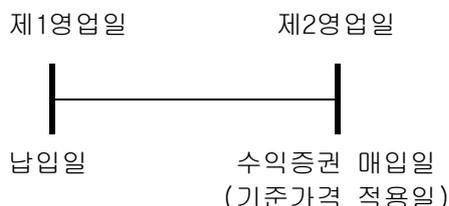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	------

종류 A-u2	가입자격 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엠브렐러 전환권(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이 부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자격은 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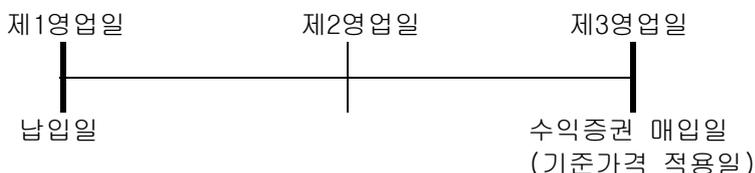
주)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다) 자금을 납입한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간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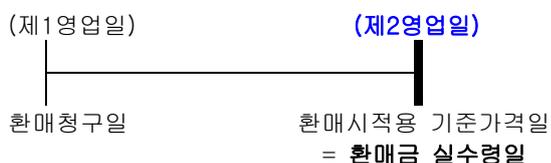
나. 환매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다)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 지급하는 경우

-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판매회사는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별로 그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종류A-u2 수익증권의 전환에 의한 환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유의사항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나)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매입일)

①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 3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시(오후 3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오후 3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②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처리 기준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	----------------	----------------------------

①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종료시간 2 시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종료시각의 2 시간전 시점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③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④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한화스트라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⑤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⑥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오후 3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 시(오후 3 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⑦한화개인MMF1호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전환처리 기준

⑦-1 한화 Value 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 차이나 H 스피드업 1.5 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한화인덱스 free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오후 3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⑦-2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⑦-3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	----------------	----------------------------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⑦-4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H(주식),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 1 호(재간접형),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H(주식),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⑦-1 한화 Value 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 차이나 H 스피드업 1.5 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한화인덱스 free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5 시(오후 3 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⑦-2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 시간전 시점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⑦-3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⑦-4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H(주식),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 1 호(재간접형),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H(주식),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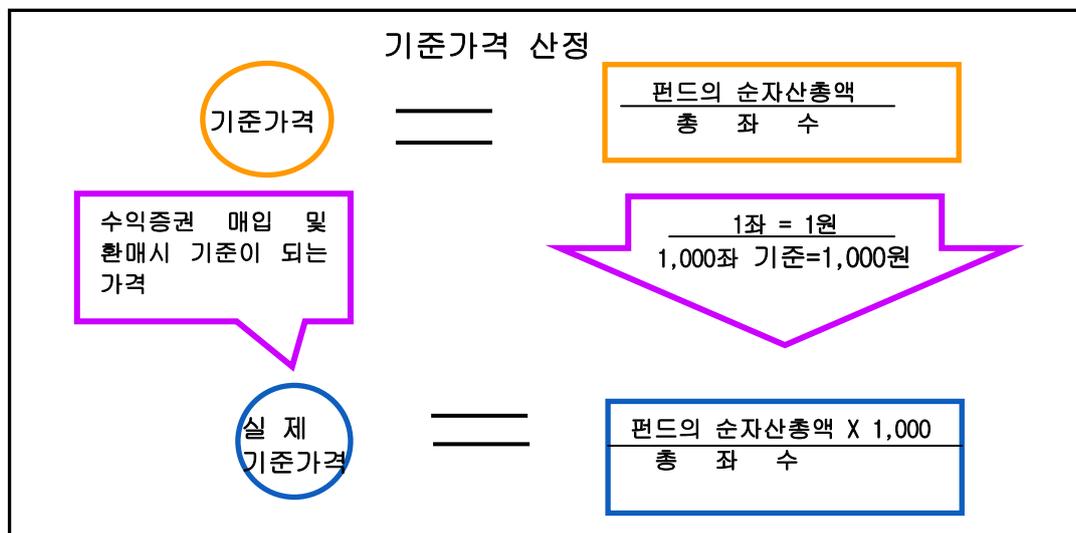
※ 기타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②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증가괴리율 ^{주1)} 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증가과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③상기 자산 이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④장부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 차이 조정	장부가가격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주1) 증가과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u2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환권	1.0% 이하 ¹⁾	-	-	-
C	제한없음	-	-	-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	-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 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 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으로 가입한 투자자	-	3년미만 환매시 0.15% 이내 ²⁾	-	-
부과기준		납입금액	환매금액	-	-

주1) 종류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의 ‘다. 전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 보수·비용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A-u2	0.1065	0.20	0.025	0.01	0.0045	0.3460	0.0033	
C	0.1065	0.2485	0.025	0.01	0.0049	0.3949	0.0028	
C-P	0.1065	0.140	0.025	0.01	-	0.2815	-	
S	0.1065	0.100	0.025	0.01	-	0.2415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12.2.09-2013.2.08)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2.2.09-2013.2.08)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u2	135	212	296	546
종류 C	40	128	224	509
종류 C-P	29	91	159	363
종류 S	25	78	137	31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를 1.0%로 가정)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종류 C-P 수익증권 수익자에게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나,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종류 C-P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수령한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금계좌의 평가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 - 연금수령연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able> <p>*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음</p>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이(연금수령일 현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지방소득세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5세 이상 70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세 이상 80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3%</td> </tr> </table> <p>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p>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5기, 제14기, 제13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5기	제 14기	제 13기
	(2013.02.08)	(2012.02.08)	(2011.02.08)
운용자산	171,929,820,279	201,094,251,604	245,433,450,930
증권	119,897,225,357	135,469,165,434	205,129,820,12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2,032,594,922	65,625,086,170	40,303,630,80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75,240,247	1,664,452,833	1,560,098,342
자산총계	172,705,060,526	202,758,704,437	246,993,549,27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107,853,636	128,018,813	140,047,660
부채총계	2,107,853,636	128,018,813	140,047,660
원본	165,687,891,636	0	0
수익조정금	-582,687,054	0	0
이익잉여금	5,492,002,308	202,630,685,624	246,853,501,612
자본총계	170,597,206,890	202,630,685,624	246,853,501,612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5기	제 14기	제 13기
	(2012.02.09 - 2013.02.08)	(2011.02.09 - 2012.02.08)	(2010.02.09 - 2011.02.08)
운용수익	6,240,155,223	0	0
이자수익	6,342,055,646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1,900,423	0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09,675,088	785,255,434	1,008,980,679
관련회사 보수	709,675,088	785,255,434	1,008,980,67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8,474,100	30,734,690	65,414,807
당기순이익	5,502,006,035	-815,990,124	-1,074,395,48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가. 종류 A-u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09 - 2013.02.08	0	0	722	733	590	600	132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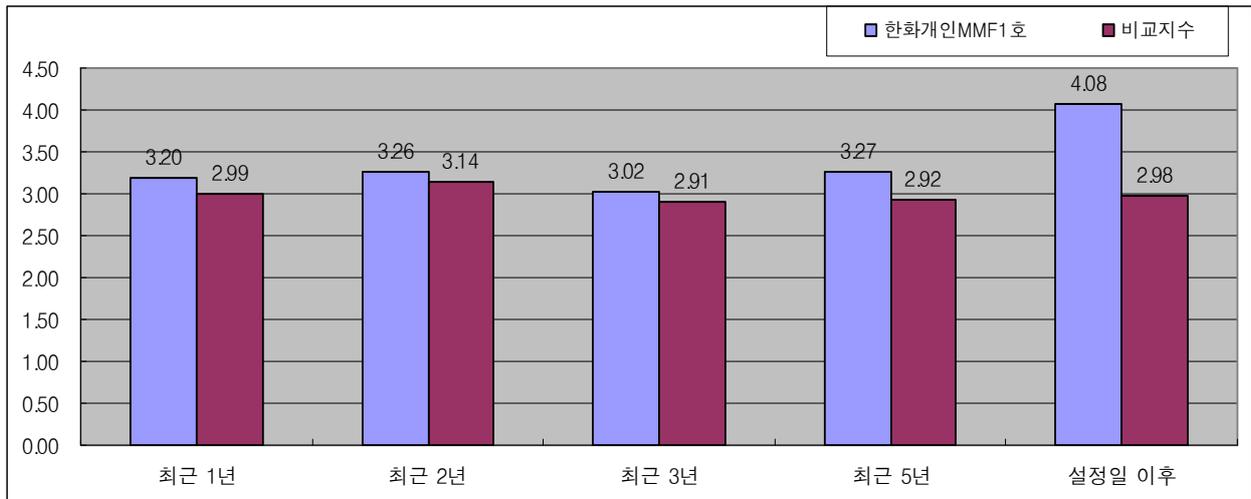
나. 종류 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2.02.09 - 2013.02.08	0	0	5,267	5,350	5,707	5,797	1,525	1,57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5.01 ~13.04.30	11.05.01 ~13.04.30	10.05.01 ~13.04.30	08.05.01 ~13.04.30	98.02.09 ~13.04.30
한화개인 MMF1 호	3.20	3.26	3.02	3.27	4.08
비교지수	2.99	3.14	2.91	2.92	2.98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A-u2	2.84				2.91
비교지수	2.96				3.00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C	2.79	3.03	2.86	3.18	4.05
비교지수	2.99	-16.10	-10.33	-5.24	0.23



(주 1) 비교지수 : 매경BP Call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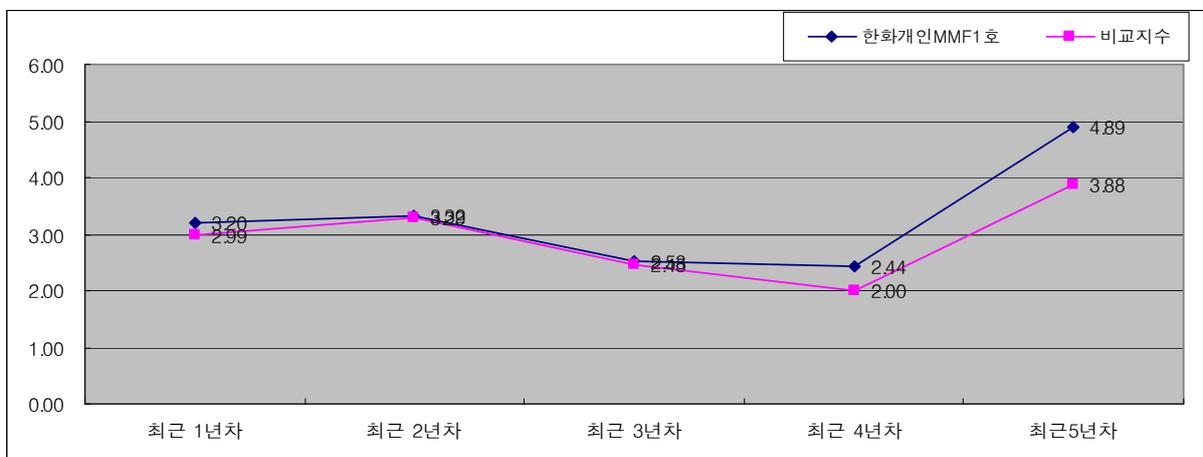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5.01 ~13.04.30	11.05.01 ~12.04.30	10.05.01 ~11.04.30	09.05.01 ~10.04.30	08.05.01 ~09.04.30
한화개인 MMF1 호	3.20	3.32	2.53	2.44	4.89
비교지수	2.99	3.29	2.45	2.00	3.88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A-u2	2.84				
비교지수	2.96				
한화개인 MMF1 호 종류 C	2.79				
비교지수	2.99				



(주 1) 비교지수 : 매경 BP Call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13-02-08)

1. 전체자산구성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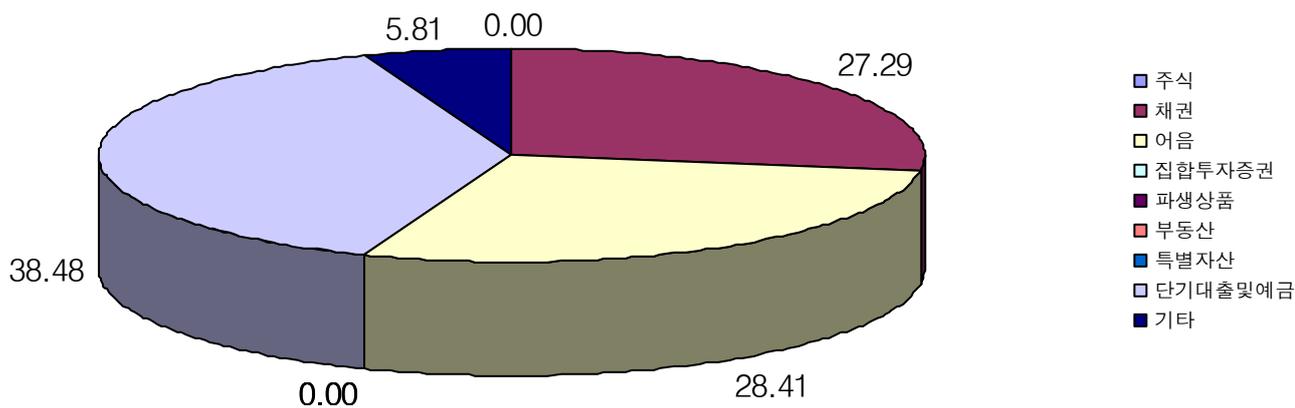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	471	491	0	0	0	0	0	0	665	100	1,727
	(0.00)	(27.29)	(28.41)	(0.00)	(0.00)	(0.00)	(0.00)	(0.00)	(0.00)	(38.48)	(5.81)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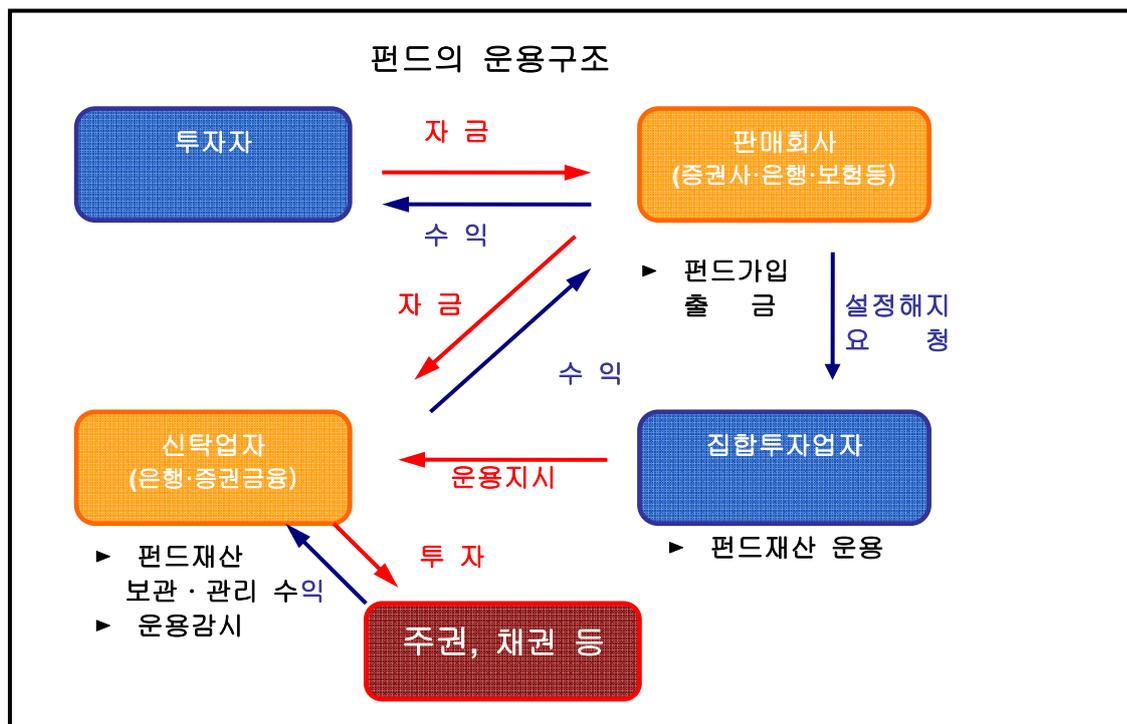
2. 국내 채권종류별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종류						합 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비중			20	59	231	161	471

한화개인MMF1호

	(0.00)	(0.00)	(4.22)	(12.55)	(49.11)	(34.12)	(100.00)
--	--------	--------	--------	---------	---------	---------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푸르덴셜 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482.5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수탁고	18,244	80,608	15,329	0	7,498	10,966	0	9,685	17,712	0	11,987	172,030
-----	--------	--------	--------	---	-------	--------	---	-------	--------	---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02)1588-1111
홈페이지 주소	www.hanabank.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본 증권이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1동 313-1) T.(02)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계약 제 45 조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부터 1 월 이내에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12.05.01 ~ 2013.04.30)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채권	37,404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2012-12-21	한화법인 MMF2-20 호	국민은행(정예) 매입	101	해지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영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 파생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B(8 점),C(6 점), D(4 점),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한화개인MMF1호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하신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개인MMF1호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음)

20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